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

(이창열 의원)

의안 번호	398

발의연월일: 2025년 3월 6일
발 의 자: 이창열 의원
찬 성 자: 남진삼, 김광성, 심현정 의원

1. 제안이유

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,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고, 환경을 보전 및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～제2조)

나.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(안 제4조)

다. 재정지원 및 교육·홍보(안 제5조～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환경정책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붙임참조(비용추계서 첨부)

다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5. 2. 19. ~ 2025. 2. 27.(9일간), 의견없음

[조례안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,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함으로써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현수막”이란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.
2. “친환경 소재”란 생분해, 산화생분해,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,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.
3. “재활용”이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
2.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
3.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) 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평창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.

제5조(재정 지원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
2.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

제6조(교육 및 홍보)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,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(포상)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「평창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관계법령]

<지방자치법>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3. (생 략)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
가. 지역개발사업

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
다. 도시·군계획사업의 시행

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도(市道)·군도(郡道)·구도(區道)의 신설·개선·보수 및 유지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바.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
사. 자연보호활동

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
자.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
차.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카. 도립공원, 광역시립공원, 군립공원,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

타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, 녹지,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
파.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

하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
거. 주차장·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너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
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<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>

제3조(옥외광고물의 분류) 옥외광고물(이하 "광고물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.

1. ~ 6의2. (생 략)

7. **현수막: 천·종이·비닐 등에 문자·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, 지주,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**

<폐기물관리법>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6. (생 략)

7. "재활용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.

가. 폐기물을 재사용·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·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

<환경정책기본법>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·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.

②. ~ ④. (생 략)

비용추계서(제3조제1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5조(재정지원)
나. 친환경 소재 활용 현수막 사용률 제고를 위한 보조금 등 비용 발생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- 평창군 현수막 생산량: 약 55,000장(5년 누계 추정치)
- 친환경 소재 제작단가: 80,000원 ~ 110,000원/장(6m × 0.9m 기준)
- 보조금 지급액: 친환경 원단 사용 시 발생하는 추가금액 = 40,000원

나. 추계 결과
- 55,000장 × 40,000원 = 금2,200,000,000원(금이십이억원)

다. 재원조달 방안
- 일반회계(군비) 편성

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도시안전국 도시과장 이정의
연락처	(033) 330 - 2470

< 연도별 비용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6년)	2차년도 (2027년)	3차년도 (2028년)	4차년도 (2029년)	5차년도 (2030년)	계
세 입		-	-	-	-	-	-
세 출		**400,000**	**420,000**	**440,000**	**460,000**	**480,000**	**2,200,000**
보조금 지급		400,000	420,000	440,000	460,000	480,000	2,200,000
재원 조달		**400,000**	**420,000**	**440,000**	**460,000**	**480.000**	**1,720,480**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376,000	395,000	413,000	431,000	450,000	2,065,000
	지방세	376,000	395,000	413,000	431,000	450,000	2,065,00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24,000	25,000	27,000	29,000	30,000	135,000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민간자본							
해외자본							
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210mm×297mm[일반용지0 60g/㎡(재활용품)